

출입관리시스템 및 무인경비 용역 과업지시서

【용역명】

서대문구의회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및 무인경비 용역 단가계약

【목적】

서대문구의회 청사의 효과적인 경비체제를 구축하여 화재, 도난, 기타 이상 발생 시 신속히 대체하여 재해 및 손실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.

【경비대상 건물(설치위치)】

- 무인경비(방법) :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-22 서대문구의회 본관 청사
(별첨 '도면' 참조)

【계약기간】 2015. 1. 1 ~ 2015. 12. 31.

【계약의 만기】

- 계약의 만기 시는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
- 계약사항의 유지 및 변경사항이 없을 때에는 차기 계약시 까지 본 계약된 내용대로 유지 수행한다.
- 용역료의 증·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
【계약의 해지】

- 정당한 사유로 해지요청을 통보한 때
- 용역기간 중 불미스런 일 발생 시
- 용역업체가 업무수행을 태만히 한 때
- 쌍방이 법령 등 기타사정에 따라 중대한 변화로 본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한 때
- 용역업체의 사정에 따라 해지 요청이 있을 때

【해지방법】

- 본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, 쌍방은 1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, 서대문구청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.
- 위약금은 잔여 계약기간 총 용역료의 10%에 해당되는 금액을 서대문구청에 지급하여야 한다.

【계약의 발효 및 종료】

본 계약의 효력은 변경 계약 개시일 2015. 1. 1부터 발생하며, 계약기간 만료일은 2015. 12. 31로 종료한다

【업무제공시간】 당일 오후 1차 경계시간 ~ 익일 1차 경계해제 시간

- 무인경비업무 개시시간은 통상적으로 18:10~07:30까지로 하되 구의회 무인경비기기를 작동 시(세팅)에는 작동 시부터 해제 시까지로 한다.
(단, 출입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가스누출감지· 화재이상통보 업무는 24시간으로 한다.)
- 서대문구의회에서 세팅하였거나 용역업체가 중앙통제소의 수신기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감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에서 세팅한 시각부터 해제 시까지를 무인경비 업무시간으로 본다.
- 제공 업무시간에 변동이 생길 경우, 경비업체는 수시로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한다(토·일요일 등 휴일에 의회청사 개방에 따른 업무제공 시간의 변경시에는 수시로 확인할 것).

【용역업무내용】

- 용역업체는 경비대상 청사에 대한 무단침입 행위, 화재징후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 및 피해 확대 방지를 하기 위한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- 방범서비스 제공 시간 중에 경비대상 구의회 청사에 대하여 이상 경보 발생 및 정상적 경계해제가 수상히 여겨지면 경비업체 요원을 현장에 즉시 출동시키고, 필요한 때에는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긴급 출동을 요청하는 등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용역업체는 무인경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고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의회사무국 의정계(☎330-1670, 청사담당 김용진 *****)로 신속히 연락을 취해야 한다.
- 용역업체는 약정된 세트시간이 지나도 세트신호가 수신되지 않을 때에는 경비대상 구의회 청사의 설치기기 상태 및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용역업체는 세트 미비로 인한 이상인 경우, 경비구역의 출입문, 창문 등 기타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, 설치기기를 세트하고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여야 한다.
- 용역업체는 회선의 고장으로 인하여 무인경비가 불가능하게 된 때, 인력경비를 하여야 하며, 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, 구의회사무국 의정계 (☎330-1670, 청사담당 김용진 *****)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용역업체는 계약의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역을 상세히 서술한 경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- 용역업체는 설치기기를 수시로 점검·보수 정비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【담당자의 지정】

- 무인경비 용역업체는 제공업무인 방범·화재·비상통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무인경비 용역업체의 인사이동시는 즉시, 변경통보하여 쌍방간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.
- 무인경비 용역업체의 출동요원의 유고 시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, 대행자를 즉시 지정하여야 한다.
- 무인경비 용역업체의 출동요원의 활동범위, 사고발생 등의 요인들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출동요원 및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.

- 무인경비 용역업체는 책임출동요원 및 차량배치현황을 자체 경비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【용역료의 지급등】

- 서대문구의회 청사의 경비구역의 이전, 확장으로 기기를 추가설치 또는 조정할 때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서대문구의회의 부담으로 한다.
- 설치공사는 경비 개시일 전 공사 완료 후 서대문구의회에 통보해야하며,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용역업체는 확인하여야 한다.
- 서대문구의회사무국은 출입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무인경비 용역비를 용역업체의 청구에 의거 당월 말일까지 지급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익월 초까지 지급한다.
- 서대문구의회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명시한 사항에 따르되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월의 용역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【손해배상】

- 용역업체는 경비 개시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경비업체의 잘못으로 경비대상 청사에 손해를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배상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용역업체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손해배상 범위
 - 배상대상물 : 경비구역내 업무용 장비 및 비품일체, 복구비용
 - 배상대인물 : 방범, 화재, 사고에 대항하기 위해 참여자 전부
(소속직원 및 일반인 모두 포함)
- 경비개시일 이후 업무제공 시간 중에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배상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, 용역업체는 서대문구의회에게 배상책임을 지며 그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보험가입에 의한다.
- 서대문구의회는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- 도난품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지급하는 손해배상 기준은 도난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피해 당시의 재고액 또는 손해 사정액이며, 침입행위로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비도 포함한다.
- 용역업체의 면책
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아니할 수 있다.
 -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사고
 - 의회 직원 및 관리하에 있는 자의 명백한 고의에 의해 발생한 손해
 단, 과실에 의한 사고는 배상해야한다.(경찰수사 결과로 판명된 경우임)
 - 구의회 직원에 의한 기기의 파괴, 고장, 기타 용역업체의 책임에 속할 수 없는 사유로 정상작동이 불가능하여 발생한 손해
 - 업무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손해로 구의회에서 정상적 업무를 위해 경계를 해제하여 업무 마무리 후 1차 경계까지 시간으로 그 시점은 용역업체 관제실에 접수된 시간으로 한다.

【분쟁의 조정】

본 계약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와 용역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【일반사항】

-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손해보험가입증명 사본 1부
- 경비업체협회 가입증 사본 1부
- 자체 정비계획서 1부
 (출동요원 목록 및 출동차량 현황 포함)